

경 산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788 호 2016년 1월 4일(월)

선	기 관 의 장
람	

■ 고 시

- 적제지 남시금지구역 지정 · 고시

(경산시 고시 제2016 - 4호) 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경산시 고시 제2016 - 4호

적제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· 고시

『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규정에 의하여
적제지 수질보전을 위하여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6년 1월 4일

경 산 시 장



- 1. 낚시금지구역 명칭 및 위치
 - 가. 명 칭 : 적제지
 - 나. 위 치 :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298-1
- 2. 금 지 행 위 : 일체의 낚시행위
- 3. 금 지 기 간 : 2016. 01. 04 ~ 2018. 12. 31
- 4.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 : 과태료 300만원 부과

【부칙】

이 고시는 2016. 01. 04부터 시행한다.